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94
----------	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8월 29일

발 의 자: 박환희,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민병주, 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심미경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이상욱, 이숙자, 이은림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최민규, 최유희, 허 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7명)

1. 제안이유

-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.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 바, 이에 대한 건립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관내 참전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”로 함(안 제4조제1항제2호).
- 나. 시장의 참전유공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 노력을 규정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대상사유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지원사업)”을 “(지원 사업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관내 참전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장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참전 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</u>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조(지원사업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관내 참전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</u>----- -----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
문서번호

2022082200000002

미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박환희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8.22.

회신일 : 2022.8.2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침부 근거 규정
3. 미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(지원사업)제1항제2호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
- ※ 안 제4조(지원사업)제3항 규정 신설은 권고적 내용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추계 대상이 아님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 - 안 제4조(지원사업)제1항제2호 내용중 ‘참전유공자’ 를 ‘관내 참전기념비·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’ 로 개정함에 따라 참전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에 대한 비용 발생

나. 추계결과

- 총비용(합계) = 72,500천원(연평균 14,5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3	2024	2025	2026	2027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참전기념비·조형물 건립 (안 제4조)		-	72,500	-	-	-	72,500
	소계(b)		-	72,500	-	-	-	72,500
□ 총 비용(b-a)			-	72,500	-	-	-	72,500

- 추계의 전제
 - 2023년은 기념비·조형물 건립을 준비하고 2024년 예산으로 1회 제작·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 추계
 - 6.25 관련 참전기념비·조형물 제작 비용은 나라장터 공고사례 참조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○ 참전기념비 조형물건립 ≙ 72,500천원

- 산출방식 = $\sum_{i=1}^5 (\text{참전기념비} \cdot \text{조형물건립비용})_i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3년~2027년)

- 연간 비용 ≙ 14,500천원

= 참전기념비 · 조형물건립비용(1회 72,500천원)

= 14,500천원(1회 발생비용을 5년동안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비용)

= 14,500천원

※ 참전기념비 · 조형물 건립 비용은 나라장터 관련 기념비 제작 공고 2가지 사례 평균 금액 적용(72,500천원= 의왕시 90,000천원+서정리초등학교 55,000천원)

연번	나라장터 공고 사례	공고금액
1	의왕시 보훈기념비(월남참전, 6.25참전, 독립유공) 건립 실시설계용역	90,000천원
3	서정리초등학교 6.25전쟁 참전유공자 기념비	55,00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선동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